

의안번호	2208172
의 퇴 인	박민규 의원
회 답 일	2025.3.25.
추 계 번호	25E08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율을 연간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15%로 일원화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6년 3,303억원 등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 7,326억원(연평균 3,46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율 상향(안 제59 조의3제1항)	-3,303	-3,382	-3,463	-3,546	-3,631	-17,326	-3,465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59조의3제1항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율을 연간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15%로 상향하여 일원화 － (현행)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시 15%, 초과 시 12%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59조의3제1항(연금계좌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징수기준)를 추계기간으로 설정
 -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생연도 기준 2025~2029년에 해당
-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를 구분하여 추계하되, 2023년 귀속 연금계좌 세액공제 현황에 따른 소득구간별 인원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향후 세수효과는 최근 3년(2021~2023년)간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적립금 연평균 증가율(2.4%)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할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 개요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공제한도 및 공제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2022년까지는 연령별·소득금액 구간별 차등화된 납입한도를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연령별·소득금액 구간별 납입한도 차등 없이 공제율만 차등 적용

[표 2]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한도 및 공제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천만원(5.5천만원) 이하	연간 600만원(900만원)	15%
4.5천만원(5.5천만원) 초과		12%

-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은 2023년 기준 1조 5,647억원이고, 2024년 실적은 1조 7,966조원으로 전망됨

[표 3] 연금계좌세액공제 조세지출 실적: 2020~2023년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전망)
연금계좌세액공제	12,117	13,226	15,647	15,428	17,966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추계 방법

(1) 근로소득자

- 2023년 귀속연도 기준,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구간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납입액 실적치에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율(15%)을 곱해 예상 공제세액을 구한 뒤, 현행 공제실적을 차감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산출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현재도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므로 세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표 4] 2023년 귀속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세수효과 추계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액	인원	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A)	개정안 공제세액 (B=A×15%)	현행 공제실적 (C)	세수효과 (B-C)
5.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51,918	476,055	71,408	57,126	14,282
8천만원 이하	591,076	2,063,523	309,528	247,621	61,907
1억원 이하	498,465	2,049,577	307,437	245,949	61,488
2억 이하	736,657	3,792,285	568,843	455,072	113,771
3억 이하	64,656	411,556	61,733	49,387	12,347
5억 이하	22,034	143,628	21,544	17,235	4,309
10억 이하	7,620	52,712	7,907	6,325	1,582
10억 초과	2,013	14,264	2,140	1,712	428
합계	2,074,439	9,003,599	1,350,540	1,080,428	270,112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종합소득자 중복 제외) 총급여액 규모별 연말정산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비율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와의 중복 제외

[표 5] 2023년 귀속 종합소득자와의 중복을 제외한 근로소득자 세수효과 추계

(단위: 백만원)

종합소득 금액	총 세수효과 [A]	연말정산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비율(%) [B]	종합소득자 중복 제외 세수효과 [A×(1-B)]
5.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4,282	20.3	11,383
8천만원 이하	61,907	18.5	50,454
1억원 이하	61,488	18.1	50,359
2억원 이하	113,771	23.2	87,376
3억원 이하	12,347	37.3	7,742
5억원 이하	4,309	45.6	2,344
10억원 이하	1,582	54.9	713
10억원 초과	428	72.1	119
합계	270,112		210,490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총 세수효과) 근로소득자 전체의 세수효과를 합하면 2,105억원임

(2) 종합소득자

- 2023년 귀속연도 기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구간 종합소득자의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납입액에 실적치에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율(15%)을 곱해 예상 공제세액을 구한 뒤, 현행 공제실적을 차감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산출한 결과 1,04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종합소득자는 현재도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므로 세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표 6] 202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종합소득자 세수효과 추계

(단위: 명, 백만원)

종합소득금액	인원	공제대상 연금계좌납입액 (A)	개정안 공제세액 (B=A×15%)	현행 공제실적 (C)	세수효과 (B-C)
4.5천만 초과 5천만 이하	49,861	188,438	28,266	22,552	5,714
6천만 이하	90,954	363,325	54,499	43,468	11,031
8천만 이하	147,576	639,463	95,919	76,580	19,339
1억 이하	104,359	504,688	75,703	60,456	15,247
2억 이하	202,944	1,120,169	168,025	134,221	33,804
3억 이하	47,713	294,439	44,166	35,274	8,892
5억 이하	30,418	193,364	29,005	23,157	5,848
7억 이하	10,364	68,574	10,286	8,214	2,072
10억 이하	6,172	41,453	6,218	4,967	1,251
10억 초과	6,575	45,169	6,775	5,411	1,364
합 계	696,936	3,459,082	518,862	414,300	104,562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3) 연도별 세수효과

- 2023 귀속연도 기준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세수효과를 합하면 2,757억원임
- 향후 세수효과는 최근 3년(2021~2023년)간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적립금 연평균 증가율(2.4%)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2025~2029년도 귀속소득에 대하여 2026~2030년에 세수효과 발생(징수기준)

[표 7] 연도별 세수효과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근로소득자	-1,096	-1,123	-1,149	-1,177	-1,205
종합소득자	-2,207	-2,260	-2,314	-2,369	-2,426
계	-3,303	-3,382	-3,463	-3,546	-3,631

다. 추계 결과

- (재정수입 변화) 개정안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율을 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15%로 일원화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6년 3,303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1조 7,326억원(연평균 3,46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율 상향(안 제59 조의3제1항)	-3,303	-3,382	-3,463	-3,546	-3,631	-17,326	-3,465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